

##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 657호
개정	2006. 10. 13	조례	제 832호
	2006. 12. 29	조례	제 858호
	2007. 7. 1	조례	제 885호
	2007. 12. 17	조례	제 911호
	2008. 12. 29	조례	제 967호
	2009. 8. 5	조례	제 1044호
	2010. 4. 29	조례	제 1074호
	2010. 12. 17	조례	제 1118호
일부 개정	2011. 7. 8	조례	제 1156호
일부 개정	2011. 12. 15	조례	제 1193호
일부 개정	2012. 3. 2	조례	제 1215호
일부 개정	2012. 9. 6	조례	제 1244호
일부 개정	2012. 11. 9	조례	제 1250호
일부 개정	2013. 3. 6	조례	제 1274호
일부 개정	2013. 11. 1	조례	제 1330호
일부 개정	2014. 10. 6	조례	제 1387호
일부 개정	2015. 5. 18	조례	제 1454호
일부 개정	2016. 5. 27	조례	제 1578호
일부 개정	2017. 5. 4	조례	제 1654호
일부 개정	2017. 10. 2	조례	제 1714호
일부 개정	2018. 10. 16	조례	제 1871호
일부 개정	2018. 12. 14	조례	제 1891호(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019. 4. 8	조례	제 1910호
일부 개정	2019. 12. 13	조례	제 1979호
일부 개정	2020. 7. 2	조례	제 2031호
일부 개정	2020. 9. 28	조례	제 2057호(노인 · 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 2015. 5. 18>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5. 5. 18>

제5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사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10. 13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17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5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9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8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5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2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6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9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6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1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6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8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아동보육과 소관 위임사무 개정사항은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7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소관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체육진흥과, 주택과, 교통정책과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4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6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1891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별표 2 도시청결과의 위임사무명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다량배출자 신고 등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 신고 등 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지정에 관한 업무 5.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한 보관시설 및 종량제 기기개선 · 대체 개선명령 및 처분 6. 다량배출자 지도 · 점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같은 법 제15조의2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같은 조례 제6조제4항 같은 조례 제7조제3항 삭제
-----------------------------	---	--

부칙 <2019. 4. 8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8 조례 제2057호, 노인 · 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별표 2 노인복지과의 제1호의 제18호의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인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5조

〔별표 1〕 &lt;개정 2018. 10. 16&gt;

##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행정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인사관리과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및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

[별표 2] &lt;개정 2020. 9. 28&gt;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감사관	1. 읍·면·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읍·면·동 자체감사 계획 수립 실시 2. 구·읍·면·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 처분	용인시 감사 규칙 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공보관	1. 공고, 고시, 공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공고, 고시, 공시 (구청에 위임하는 사무에 한함)	
행정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공무직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연가계획 및 허가 2. 병가 및 공가허가 3. 특별휴가 허가 1. 공무직 전보 2. 기간제근로자 고용 · 고용중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21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같은 조례 제23조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자치분권과	1.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장학생 선발 2. 장학금 지급 3. 장학금 지급 정지	용인시 통 ·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인사관리과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구신설, 폐지, 분합이 있을 때에는 「용인시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및 전보(구간 전보 제외, 읍 · 면소속 보직부여 제외) 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무 (신규임용 제외) · 전보, 휴직, 복직, 징계 (중징계 제외) 승급, 시보해제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징계집행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같은 법 제72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3.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무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승진(인원 사전승인) 4. 청원경찰 임면 · 전보, 승급 (신규임용 제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청원경찰법 제5조
정보통신과	1.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의 위임범위에 한정한다)	1. 검사신청서 (설계도서등)확인 2. 현장방문 사용전검사 실시 3. 사용전검사필증 교부결정 4. 사용전검사필증교부대장 정리 5. 재검사실시(보완지시) 6. 수수료 7. 위반사항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제75조
민원여권과	1.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1. 주민등록증의 관리 1.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구청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세정과	1.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납세의 고지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징 세액 제외) 2. 부과취소 및 변경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징 세액 제외) 3. 납기전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지방세기본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4.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5. 물납	지방세법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6. 분납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7. 가산금 및 독촉	같은 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8.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9. 시세징수유예 등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2.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	10. 과오납금의 처리 및 환부 이자계산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11.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2.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13.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같은 법 제140조
		14. 지방세 부과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같은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1. 개별주택가격 산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2.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가격 산정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3.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4.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같은 법 제17조
		5. 주택가격 개별(소유자) 통지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징수과	1. 시세의 체납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6. 이의신청, 가격정정 7.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1. 체납처분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2. 결손처분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3. 관허사업의 제한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4. 체납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등의 유예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등)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5. 서류의 송달 6. 공시송달 7. 징수촉탁  8. 예탁  9. 지방세 체납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10. 시세의 소멸시효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9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74조까지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같은 법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같은 법 제39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1. 시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12. 세무공무원의 질문 · 검사 13. 인도명령 14. 번호판 영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2조 같은 법 제153조 국세징수법 제46조 지방세법 제131조
교육청소년과	1.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및 관리 2.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청소년보호법 제5조
문화예술과	1. 영화상영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영화상영신고 1. 유통관련업 소양교육 2. 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 3.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4. 유통관련업 등록, 변경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5. 유통관련업 등록증 교부, 재교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7. 음반 · 비디오물 ·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8. 음반 · 비디오물 ·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영업정지, 허가 · 등록 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청문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98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9. 유통관련업소 자율지도요원 위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3. 출판사 및 인쇄소에 1. 출판, 인쇄소 신고 및 변경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관한 다음의 사무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2.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
		부과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4. 읍·면·동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읍·면·동 민속행사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체육진흥과	1.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생활체육 육성사업 (구청 단위 생활체육 육성 사업에 한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2. 체육행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체육행사 추진 (구청 단위 체육행사에 한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3.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회원모집 2. 회원의 보호 3. 신고(변경)수리 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5.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6. 시정명령 7. 등록취소 등 8. 청문 9. 수수료 10. 고발 11. 과태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4. 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체육시설의 보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억원 미만)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복지정책과	1.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발급 확인 대상자 조사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1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청문의 실시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및 변경사항 관리 3.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 통지 4.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반환 관리(현년도분) 5. 조건부수급자 및 조건제시 유예자 조사	같은 법 제27조의 2, 제29, 제3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
	2. 의료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의료급여증 발급 및 관리 2. 의료급여 보장·변경 결정 통지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3. 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1.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2.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노숙인보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노인 건강진단 실시 2. 경로우대사업의 실시 지원 3. 기초연금 지급 등 4. 상담 및 시설입소 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관리(노인복지관 제외) 6. 가출·행려 노인 업무 7.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8. 노인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9. 저소득 노인 후원·결연사업 10.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사업 11. 노인대학 및 한글반 운영 12.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 13. 노인회·분회 운영·활동비	노인복지법 제27조 같은 법 제26조 기초연금법 제13조, 제14조 노인복지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법 제39조의10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지원 14. 월동난방비 지급 15. 가정도우미 지원 16. 노인 일거리사업 추진 17. 노인 일자리사업 18.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감독 19. 경로당 신축, 임차, 유지·보수(1천만원 이상) 2. 어버이날 행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사무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3조 용인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5조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노인복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8조 노인복지법 제35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관한 다음의 권한	2.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변경·폐지 등 3. 운영비 미지원 시설 감독 4. 운영비 미지원 시설 사업의 정지 등 5. 청문 6. 과태료 7. 운영비 미지원 시설 생계급여 집행 및 정산 8. 장제급여 집행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61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설치 2.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변경·폐지 등 3. 운영비 미지원 시설 감독 4. 운영비 미지원 시설 사업의 정지 등 5. 청문 6. 과태료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61조의2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2.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3.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4.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 5. 청문 6.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7. 과태료 8. 과징금 9.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7. 재가장기 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2.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변경·폐업 등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4.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보고 및 검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같은 법 제33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8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61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5. 청문 6. 과태료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단속, 과태료 부과  2.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3. 시설 입·퇴소 의뢰 4. 각종 급여지급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9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34조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장애인연금법 제13조
여성가족과	1.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아동보육과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사무 (정부 지원 어린이집 제외)  3.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2. 아동 등에 대한 조사 3.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4.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사항 5. 소년소녀 가정지원 6. 가정위탁 아동지원 1.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등 2.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3. 비용의 보조금 등 지급 4.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아동복지법 제15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4조 입양특례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단, 정부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제외)	2. 지도와 명령 3. 보고와 검사 4. 시정 또는 변경명령, 이행강제금 5.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의 청문 6. 삭제 <2019. 12. 13>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태료의 부과·징수 9. 어린이집의 폐쇄 등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4조, 제44조의 2, 제44조의 3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4조,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의 2
일자리정책과	1. 직업소개소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처리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처리 3. 유·무료 직업 소개사업의 폐지신고 4.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5.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의 폐쇄조치 6. 과태료의 부과 7.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현황보고 8.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지도단속 및 결과보고 9.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보고 및 검사	직업안정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 2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7조
	2. 담배 도·소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담배소매인의 지정 2.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3.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4. 담배판매업등의 휴·폐업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2조의 2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기업지원과		5. 담배 도·소매인 취소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22조의3
		6. 담배 도·소매인의 보고 및 관련장부 등의 확인	같은 법 제24조
		7.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같은 법 제25조제3항
		8.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같은 법 제25조의4
		9. 담배도매업 등록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
		10. 담배도매업의 등록 취소	같은 법 제15조
		11. 과태료	같은 법 제28조
		1. 공장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2. 공장등록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3. 무허가공장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농업정책과		1. 양곡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양곡관리법 제19조
		2. 양곡가공업의 지도, 단속	같은 법 제27조
		3.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6조
		1. 판매업 등록신청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2. 등록증의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 등록의 취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4. 행정처분	같은 법 제7조제2항, 제29조
		5.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3. 농약관리법 위반자에	같은 법 제25조
		1. 과태료 부과징수	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관한 과태료 부과 사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4. 농지소유의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하는 농지 등의 처분 2. 처분명령의 유예 3. 청문실시 4.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62조
	5. 농지의 이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농지법 제20조
	6.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관리	농지법 제23조
	7.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변경 - 농지전용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 (단, 다음 농지전용관련 협의는 제외) 가.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의2호 다.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관련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사항에 대한 협의) 2. 농지의 전용신고, 협의 및 변경 3. 농지의 태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및 변경 4. 농지의 태용도 일시사용 신고 및 변경 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 6. 농지전용허가, 신고, 태용도 일시 사용 허가의 취소 7. 용도변경 승인 8. 불법 전용농지의 단속 및 허가(협의), 신고, 태용도 일시 사용허가의 사후관리 (원상회복, 고발 등) 9.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농지법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같은 법 제35조, 제4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농지법 제3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39조, 제42조 같은 법 제56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8.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처인구 산업과에 한함)	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축산과	1. 축산업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부화업, 종축업 등록 2. 계란집하업 등록 3. 가축사육업 등록	축산법 제22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2조
	2. 초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초지조성허가 2. 초지전용허가 3. 초지관리 실태조사	초지법 제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3. 가축통계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가축통계조사	농림통계조사규칙 (농림부령 제1384호)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2.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사항 변경신고 3. 가축인공수정소 휴업, 폐업, 영업 재개 신고	축산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5. 수산 및 내수면 인·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내수면어업허가 2. 내수면어업 신고(변경, 폐지) 3. 어선등록 4. 어선관리 5. 수산가공업신고 6. 양어장 신고 7. 내수면어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8.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 (취소 등) 9. 낚시터업의 승계 10.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 폐쇄 조치(영업의 폐쇄 및 폐기 등의 조치) 11. 낚시터업의 휴업·폐업등의 신고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어선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5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제25조, 제27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3조, 제38조, 제42조 같은 법 제24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2. 낚시어선업의 신고 (폐업신고 등)	같은 법 제25조, 제39조
		13.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55조
	6. 축산물 운반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2. 축산물운반업 변경허가	같은 법 제24조
		3. 축산물운반업 휴업, 폐업, 재개업	같은 법 제24조
		4. 축산물운반업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5. 축산물운반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7조, 제36조, 제38조, 제47조
	7. 축산물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2. 식육판매업 변경신고	같은 법 제24조
		3. 식육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같은 법 제24조
		4. 식육판매업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5. 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신고	같은 법 제24조
		6. 식육부산물판매업 변경신고	같은 법 제24조
		7. 식육부산물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같은 법 제24조
		8. 식육부산물판매업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9.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	같은 법 제24조
		10. 우유류판매업 변경신고	같은 법 제24조
		11. 우유류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같은 법 제24조
		12. 우유류판매업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13.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같은 법 제24조
		1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같은 법 제24조
		1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같은 법 제24조
		16.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지위 승계	같은 법 제26조
		17. 축산물판매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7조, 제36조, 제38조, 제47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8.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19. 식용란수집판매업 변경신고 20. 식용란수집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21. 식용란수집판매업 지위승계 2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2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변경신고 2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휴업, 폐업, 재개업 2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위승계 26. 그 밖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4조 약사법 제20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20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같은 법 제22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 의료기기법 제17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17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같은 법 제17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 약사법 제76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같은 법 제81조 수의사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41조
8. 동물약국 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동물약국 개설 등록 신청 2. 동물약국 등록사항등의 변경 3. 동물약국 폐업, 휴업, 재개업		
9.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신고 2.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3.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폐업 · 휴업 · 재개업		
10.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 규칙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승인, 등록의 취소 2. 과징금 부과		
11. 동물병원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동물병원개설 신고 2. 동물병원 신고사항 변경 3. 동물병원 휴업, 폐업, 재개업 4. 동물진료업의 정지 5. 과태료 부과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변경)신고 및 준공 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3.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 14. 가축분뇨의 재활용 (변경)신고 및 가축 사육제한 지역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5. 기술관리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16.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처인구 산업과에 한함) 17. 삭제 <2019. 12. 13>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2.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3.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1.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1. 가축분뇨의 재활용 (변경) 신고 2. 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 1. 기술관리인 교육 등 1.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사업 촉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축산농가 방역지도에 관한 사항 3. 축산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 4.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추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고용 축산농가 신고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고용 축산농가 교육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축질병 예방접종 추진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산림과	1. 산불예방사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산지정화 업무에	1. 입산허가 2.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허가 3. 산불예방활동 1. 산지정화활동	산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3조 산림보호법 제14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p>관한 다음의 사무</p> <p>3.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4. 등산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5. 숲사랑 소년단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6.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협의)에 관한 다음의 사무 (산지전용면적 1500제곱 미터 이하)</p> <p>7.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협의)에 관한 다음의 사무 (산지전용면적 1500제곱 미터 이하)</p> <p>8. 사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1.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p> <p>2. 사법경찰 업무</p> <p>1. 등산로 재정비 및 관리</p> <p>2. 산악구조대의 운영</p> <p>1. 숲사랑 소년단 선발계획 보고</p> <p>2. 숲사랑 소년단 명단보고</p> <p>3. 숲사랑 소년단 하기수련 대회계획</p> <p>1.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협의)</p> <p>1.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협의)</p> <p>1. 산지전용허가등의 효력</p> <p>2.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p> <p>3. 산지전용허가기준 등</p> <p>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 징수 · 환급</p> <p>5. 산지전용허가의 취소</p> <p>6. 용도변경의 승인</p> <p>7. 재해의 방지 등</p> <p>8. 복구비의 예치</p> <p>9.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p> <p>산림보호법 제9조</p> <p>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 2</p> <p>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률 제28조</p> <p>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16조</p> <p>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p> <p>산지관리법 제15조의2</p> <p>산지관리법 제16조</p> <p>같은 법 제17조</p> <p>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p> <p>같은 법 제20조</p> <p>같은 법 제21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39조</p>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동물보호과	1. 동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	10. 복구설계서의 승인	같은 법 제40조
		11. 복구의 대집행	같은 법 제41조
		12. 복구준공검사	같은 법 제42조
		13. 복구비의 반환	같은 법 제43조
		14.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같은 법 제44조
		15. 불법 전용산지 등의 조사	같은 법 제44조의2
		16. 청문	같은 법 제49조
	2. 동물영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물장묘업 제외)	1. 등록대상 동물의 학대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법 제8조
		2.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2조
		3.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3조의2, 제13조의3
	3.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 (구청위임사무에 한함)	1. 영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3조
		2. 영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4조
		3.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35조
		4. 영업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9조, 제9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4.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무 (구청위임사무에 한함)	1.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 (구청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39조
시민안전 담당관	1.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소규모 지역 · 직장민방위대 통합 편성	민방위기본법 제19조
		2. 직장 연합민방위대 구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3.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해체 · 이전 · 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4.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2. 민방위대 지휘감독 및 겸열에 관한	1. 관내 직장민방위 대대장의 감독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 민방위대 편성 · 교육훈련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다음의 사무	· 시설 · 장비 현황 검열	
	3.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직장 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대 교육 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4.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및 실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5.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같은 법 제39조
	6. 민방위 준비 명령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	같은 법 제26조
	7.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 · 장비 및 물자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민방위 준비를 명할 시설 · 장비 및 물자 관리 가. 공공용대비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관리 나. 대피시설 안내 및 유도표지판 설치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8. 재난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2.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3.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확인서 빌급 5. 재난상황 보고 6. 재해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의 지정 7. 응급조치의 지원 등 8. 재난상황기록 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7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제25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70조
도시정책과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2.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등 인 · 허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제54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2. 개발제한구역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협의 등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고발 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도시개발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 4.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도시개발사업구역 위법 행위 단속 1. 택지개발예정지구 위법 행위 단속 1. 준공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의 인·허가 관련 지구단위계획업무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외) 2. 준공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1. 개발행위의 허가 (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2. 개발행위의 허가기간 연장 및 명의변경 (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3. 개발행위의 준공 (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4. 불법토지형질 변경 고발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 (구청장이 허가한 개발행위허가 부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한함)	도시개발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제5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140조
토지정보과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2.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취하 반려 2.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 3. 토지거래허가 일반업무 4.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 실태 조사 5. 토지거래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제18조
	3.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6. 신고포상금의 지급 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2.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교부 및 재교부 4. 부동산중개업 이전 신고 5. 부동산중개업(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6. 업무보증(변경)설정 신고 7.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8.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9. 부동산중개업 과태료처분 10. 포상금의 지급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제46조
	4.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등 (개별공시지가 정정대상 토지조사) 2.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등 3.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5.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5.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 6.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원 발급 7. 개별공시지가의 관계행정 기관 등에 제공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0조제1항
	6. 부동산거래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 확인조사 2. 과징금 부과 및 징수 3. 과징금 물납 허가 4. 이행강제금 부과 5. 과징금 체납 처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7.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부동산 거래 계약 검인 2.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 징수 3. 부동산 거래의 신고 4. 신고 내용의 조사 5. 신고 내용의 검증 6. 과태료 부과징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같은 법 제12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28조
	8. 법인 아닌 사단 ·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종중, 종교 기타단체)	부동산 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28조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주택과	1.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2.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업무 2.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행정 처분 3. 관리규약의 신고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51조까지 같은 법 제102조 같은 법 제1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4. 공동주택 단지내 불법행위 단속 5. 단지 부설주차장 안전점검 및 관리 6.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리모델링 제외) 7. 준공 후 공동주택 유지 관리 등 8.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제90조부터 제102조까지  같은 법 제64조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	1.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 및 지도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3.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4. 안전점검 실시 5. 안전진단의 실시 6. 점검결과 등의 기록 보관 7. 안전교육 8. 보험가입 9.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10.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제14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31조
건축과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3.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4. 건축협의 5.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6. 적용의 완화 7. 기존건축물의 특례 8.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건축법 제11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3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예치금등 9.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0.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11. 가설건축물의 허가 12.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20조 주택법 제54조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신청규모가 6개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3.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4. 건축협의 5.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6. 적용의 완화 7. 기존건축물의 특례 8.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9.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0.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11. 가설건축물의 허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3조
	3.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건축신고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 공작물 축조신고 4.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건축법 제14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79조
	4. 기존 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용도변경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의 용도변경) 2. 대수선허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업무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제11조 건축물관리법 제9조, 제11조부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4.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 5. 기준 건축물 화재안전보강 대상 건축물 관리 업무(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6.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관리 업무 7. 빙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업무 8. 처분 등 필요한 조치 (위임범위에 한정한다)	제16조까지,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 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51조까지 건축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5.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2. 건축물 대장전환 및 합병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및 정정 4.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5.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의 발급 등	건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같은 규칙 제25조
	6.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위반행위 기준으로 하며,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대수선의 위임범위에 한정한다)	1. 공사중지 2. 시정명령 3. 고발 4.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5. 재산압류 6. 공매처분 7. 예방 및 단속 8. 철거 9. 행정대집행	건축법 제79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 같은 법 제80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같은 법 제71조 건축법 시행령 제24조 건축법 제85조 같은 법 제85조
	7. 사용승인된 부설 주차장 위법사항 조치	1. 용도변경 2. 타용도 사용행위 조치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도시디자인과	<p>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위반행위 기준으로 하며 건축허가 및 신고의 위임범위에 한정한다)</p> <p>8. 조경 및 공개공지 등의 관리 및 조치</p> <p>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정한다)</p>	<p>3. 본래의 기능유지 관리</p> <p>1. 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지도단속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p> <p>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은 제외)</p> <p>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p> <p>3.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p> <p>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p> <p>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취소</p> <p>6. 광고물 허가·신고·안전도검 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p> <p>7. 과태료의 부과 징수</p> <p>8.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p> <p>9. 행정대집행의 특례</p> <p>10. 지정계시시설 관리 (위탁 사무 제외)</p>	<p>같은 법 제19조의4</p> <p>건축법 제79조, 제80조</p>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p> <p>같은 법 제3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0조</p> <p>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p> <p>같은 법 제10조</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17조</p> <p>같은 법 제20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55조</p> <p>같은 법 제10조의3</p> <p>같은 법 시행령 제43조</p> <p>같은 법 제10조의2</p> <p>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p> <p>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p>
교통정책과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p>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부과</p> <p>가. 징수·부담금 경감비율 적용</p>	<p>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6조</p> <p>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p>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접수 다.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처리와 이행 여부 확인 라. 통근관리인 선임 등 마.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바. 부담금 경감신청서 접수 및 경감신청 내역 확인 조사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제14조
	2.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공영노외(둔치포함) 및 노상주차장유지관리(연간단가 계약포함) 2. 주차장(기계식, 노상, 노외)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거주자 우선주차 및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민영주차장 설치 · 변경 · 폐지신고 5.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고 6.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휴업, 폐업)신고 7.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교부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30조 같은 법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9조의14 같은 법 제19조의17 같은 법 제19조의7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연간단가 계약포함) 2.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방통행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교통체계 개선 (현황 도로구역 내)	도로교통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5. 불법주·정차 단속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6.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1.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2.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3. 비송사건 이첩 4.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 1.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60조, 제161조 같은 법 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도로교통법 제6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60조
대중교통과	1. 택시·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택시·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연간단가 계약 포함)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39조
건설도로과	1.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도로건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 고발 1. 도로점용허가 2.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고발 3.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허가 1. 도로 및 교량 개설 사업 (폭 12미터 이하) 2. 도로교량 위·수탁사업 추진 (폭 12미터 이하) 3. 도로 및 교량 확포장 사업 4. 도로사업조사, 측량설계 및 검사 5. 도로공사 편입용지 및 보상 업무(폭 12미터 이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제80조, 제81조, 제99조 도로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같은 법 제66조, 제69조, 제72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같은 법 제52조, 제53조 도로법 제31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생태하천과	4. 가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6. 도로공사관련 위·수탁보상 업무	제28조, 제61조, 제81조 같은 법 제28조, 제61조, 제81조
		7. 도로공사보상관련 수용재결 업무	같은 법 제28조, 제61조, 제81조
		8. 도로시설물 설치(육교, 지하도)	도로법 제31조
		9. 도로·교량 유지보수 관리업무	같은 법 제31조
		10.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감독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11.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같은 법 제31조
		12. 자전거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제31조
		13. 보행자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제31조, 제54조
		14. 동주민센터 빌주공사 지도감독	
		15.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1.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5.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법 제31조
		2. 과적차량 지도단속	같은 법 제77조
		3. 설해대책 사업 추진	같은 법 제31조
		4. 수로원 지도감독	같은 법 제31조
		5.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제75조
		6. 접도구역 관리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7. 도로소파보수 및 정비	같은 법 제31조
		8. 도로표지판 관리	같은 법 제55조
		9. 비 법정도로 관리	같은 법 제31조
		1.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업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소하천점용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0조, 제21조
		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4조, 제22조
		1.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3. 소하천점용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하천점용료 부과·징수·고발	같은 법 제37조, 제94조, 제95조
		1. 소하천부지 사용료부과 및 조정	소하천정비법 제22조
	3. 소하천부지 관련 세외수입정기보고	2. 소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세 징수	같은 법 제23조
		3. 소하천부지 관련 세외수입정기보고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환경과	4.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소하천 점·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2. 소하천사업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같은 법 제8조
		3. 소하천 유지·관리	같은 법 제3조
	5.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공유수면의 관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8조
		3.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9조
		4.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0조
		5. 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같은 법 제11조
		6.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13조
		7.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15조
		8. 권리·의무의 이전 등	같은 법 제16조
		9.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같은 법 제17조
		10. 준공검사 등	같은 법 제18조
		11. 점용·사용허가등의 취소	같은 법 제19조
		12.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20조
		13.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21조
		14.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관련 조사 등	같은 법 제55조
		15. 청문	같은 법 제58조
	6. 우수유출 저감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우수유출저감 시설 유지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9조
환경과	1. 토양오염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같은 법 제14조
		3.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26조의2
		4. 과태료 징수	같은 법 제32조
	2. 야생생물 보호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야생동물 밀렵단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9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자연휴식지 및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3. 수렵면허 취소 및 정지 1. 자연휴식지 및 자연발생 유지관리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9조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4. 낚시행위의 제한사항의 지도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위반사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징수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기후에너지과	1. 악취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다만, 대기 · 수질 복합시설일 경우 1개 시설이라도 1종 부터 4종까지에 해당 되는 사업장은 제외)	1. 악취배출시설 지정 및 설치 신고 2.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명령 등) 3. 보고, 검사 4. 과태료 부과 징수 5. 생활악취의 관리	악취방지법 제8조, 제8조의2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16조3
	2.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특정공사에 대한 사전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 2.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3. 생활소음 진동 발생자 및 교통소음 진동관리지역 내에 대한 조치 4.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3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제20조
	3. 운행차 점검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운행차의 수시점검 2. 운행차의 개선명령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4. 소음진동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대기 · 수질	1.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2.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수리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수질 및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복합시설일 경우 1개 시설이라도 1종 부터 4종까지에 해당 되는 사업장은 제외)	3.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수리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5.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 명령 6. 조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 폐쇄명령 7.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 8. 보고명령 및 검사 9. 과태료의 징수 10.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제51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5. 석면건축물 신고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수리 및 교육 3.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공개 4. 석면해체 · 제거작업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준수 (석면자재 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5. 석면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중지 등 (석면자재 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6.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지정 및 관리 (석면자재 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판매사업 허가 2. 판매사업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5조제3항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3. 판매사업 지위승계 신고 4. 동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5.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6. 동사업자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 및 사후관리 7. 동사업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명령 8. 동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9.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44조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판매사업 허가 2. 판매사업 변경허가 3. 판매사업 지위승계 신고 4. 동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5.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6. 동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등의 처분 및 사후관리 7. 동사업자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 같은 법 제4조제5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24조
	8.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도시가스특정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 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9.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판매사업 신고수리 2. 판매사업 변경신고 3.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신고 수리 4. 동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5. 사업의 정지명령 및 등록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13조제4항
	10. 전기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다른 자의 토지 등 예의 출입허가 2.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허가	전기사업법 제8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89조제2항
도시청결과	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생활폐기물 관련 홍보 및 계도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2. 청결유지명령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방치폐기물 처리 4. 공중용 휴지통 관리에 관한 업무 5.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장소, 수거일자지정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6. 대행업체 지도·점검 7.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8.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9.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 10.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8조제2항 같은 조례 제22조 용인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정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다량배출자 신고 등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 신고 등 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지정에 관한 업무 5.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한 보관시설 및 종량제 기기개선· 대체 개선명령 및 처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같은 법 제15조의2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제3항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6. 다량배출자 지도·점검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제68조
	4. 위임사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보고서의 제출명령 2. 보고명령 및 검사 3. 조치명령, 대집행 및 비용징수 4.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5. 의견제출 6. 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의2 같은 법 제4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5. 규격봉투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 6.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7.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7.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1. 건설폐기물 배출, 보관방법의 변경 등의 조치명령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등 3. 전산정보 열람요청 4. 보고명령 및 검사 5. 지도·점검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2. 나눔장터 운영 및 활성화에 따른 장터확장 3. 적환장 관리(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부과·징수·고발) 4. 삭제 <2019. 12. 13> 5.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시책추진 6. 농촌폐비닐에 관한 업무 7. 및 8. 삭제 <2019. 12. 13>	같은 법 제68조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66조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같은 법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제5조
위생과	1. 조리사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업종 [단,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1. 조리사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2. 조리사의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 1. 영업의 신고(허가), 변경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영업자 지위승계 3. 영업의 폐업신고 4. 영업의 시정명령등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업무 등 포함) 5. 영업소 출입, 검사, 수거 등의 업무 6. 무신고식품영업 등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식품위생법 제53조 같은 법 제80조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84조까지, 제10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2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용기포장류제조업, 위생등급 업무 제외] 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업무 8.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9. 위생등급에 관한 업무 10.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업무 11.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7조, 제89조 같은 법 제86조
	3.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숙박업·목욕장업 제외)	1.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변경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공중위생업의 지위승계 3. 공중위생업의 폐업신고 4. 공중위생업의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업무포함) 5. 공중위생업의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6.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등에 관한 업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4. 이·미용사 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이·미용사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2. 이·미용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제7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5.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신고 및 변경신고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3. 폐업, 재개업 4.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공중위생법 제2조, 제14조의2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20조, 제23조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영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업무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3. 영업자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 등 4.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5. 포상금 지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같은 법 제37조, 제47조 같은 법 제40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식품점업체소 놀이 시설에 관한 사항)	6. 영업에 대한 출입·검사· 수거등에 관한 업무 1.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 및 지도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3.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4. 안전점검 실시 5. 안전진단의 실시 6. 점검결과 등의 기록 보관 7. 안전교육 8. 보험가입 9.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10.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0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제14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31조
	8.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2.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3.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6조, 제7조 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동부·서부 공원관리과	1. 녹지(완충, 경관, 연결, 공공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백지구 제외)	1.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2. 점용허가, 사용수익허가, 사용승인, 점용료부과·징수 3. 그 밖의 녹지정비 4. 불법행위단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제41조,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제38조, 제49조
	2. 광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백지구 제외)	1. 광장 사용승인, 점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불법행위단속 2. 광장재정비 및 시설물 관리	같은 법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3. 가로수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백지구 제외)	1. 가로수 재정비 및 관리 (전정·병충해·보식 등) 2. 가로수이식(제거)민원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제74조제2항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4. 그 밖의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백지구 제외)	변상금 징수 1. 교통섬·나들목·중앙분리대·보행자도로 수목 및 녹지관리, 시설물관리 2. 옥상녹화 사업 및 학교숲 관리 1억그루나무심기 관리 및 관상수·무궁화 관리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0조
	5. 가로화단, 쉼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가로화단, 쉼터조성 및 관리	같은 법 제20조
	6. 꽃식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꽃식재 계획 및 시행 2. 사업시행 3. 추진실적보고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0조
수도시설과	1. 지하수보전 및 개발·이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2.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신고 등 3. 허가의 취소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제9조의4
	2.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원상복구 2.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및 오염 유발시설 조치 3. 수질검사 및 출입검사 등 4. 타인토지에 출입 등 5. 허가 수수료 부과 징수 6.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취소 청문 7.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3. 지하수개발·이용 시 공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지하수개발·이용 시 공업의 등록	같은 법 제22조
	4.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의 등록	같은 법 제27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5.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시설물 유지관리 2. 수질채수 및 검사의뢰 수질검사 성적서 홍보 및 게시	먹는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하수재생과	1.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하수배출량의 조사 2. 하수배출량의 산정 3.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4. 부과액 조정 신청 접수 및 결정 5.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	하수도법 제65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5조
하수시설과	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인·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2. 공공하수도공사 및 유지관리 및 행정처분 3.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접수처리 4. 점용허가(행정처분 포함) 5.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 6. 인허가 관련법 협의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인·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7. 점용료의 징수 8.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변경)신고(공공하수도 사용신고) 9. 배수시설 설치 허가취소 및 검사(행정처분 포함)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제11조, 제19조 및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4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65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및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2. 개인하수처리시설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하수도법 제34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설치(변경) 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으로 위임된 건축 인·하가·신고사항에 한정함) 3.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50m <sup>3</sup> 이상 제외) 4. 분뇨의 재활용(변경)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5.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 개방화장실 지정 및 공중화장실 등 관리 2.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 3. 유료화장실 신고 및 지도·관리 4.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 행위지도 6.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7.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 하수도법 제40조 같은 법 제39조 하수도법 제44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1조
차량등록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2. 이륜자동차의 변경·사용 폐지 신고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5. 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교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3조 같은 법 제9조, 제52조 같은 법 제18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같은 법 제49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6. 이륜자동차(폐지)대장 발급 7.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8.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 ·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의 이의신청 수리 9.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10.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11.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같은 법 제7조, 제52조 같은 법 제26조, 제52조 같은 법 제28조, 제52조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같은 법 제8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2. 무단방치 차량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무단방치 차량 신고접수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3. 통고처분 및 검찰송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등 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 등 5.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6.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같은 법 제28조

〔별표 3〕 &lt;개정 2020. 7. 2&gt;

##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인사관리과	1. 소속 공무원의 보직 부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읍·면장에 한정함)	1.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부여 (읍·면장에 한정함)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민원여권과	1. 주민등록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주민등록 신고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4.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의한 주민 등록표의 정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5.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6. 주민등록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7.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지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 비치 2.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 비치 기록 3. 주민등록번호 부여 4. 주민등록표 재작성  1. 주민등록 신고 및 처리  1.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1.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및 본적지 통보  1.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1. 신규 증민등록증 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3. 습득 및 회수주민등록증 보관 및 인계 1.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민등록법 제7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22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6조, 제19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주민등록법 제14조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주민등록법 제40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세정과	1.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고지서 교부 및 송달 2. 시세 현황조사 및 자료 제출 (보고) (읍·면장에 한정함) 3. 시세 신고접수 및 납부독려 (읍·면장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05조 같은 법 제84조, 제84조의 7, 제120조
징수과	1. 시세의 체납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납세증명서 발급 2. 고지서(독촉장) 교부 및 송달 3. 체납액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복지정책과	1. 긴급지원, 무한돌봄 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상담신청 및 접수 2. 현장확인 및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제9조
노인복지과	1.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기초연금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매·화장 및 묘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경로당 설치, 변경, 폐·휴지 신고 2. 경로당 시설관리 및 지원 3. 운영·난방비 지급 4. 사회봉사활동비 지급 5. 경로당 사업의 정지  1. 기초연금 신청접수  1. 매·화장신고(읍·면장에 한정함) 2. 공설묘지의 매장, 화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 증명서 발급(읍·면장에 한정함) 3.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읍·면장에 한정함) 4. 공설묘지의 사용료, 수수료 징수 (읍·면장에 한정함)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0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43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3조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장애인 등록 신청·접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2.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반환통보 3.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신청·접수 5.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및 발급 6.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7. 장애인 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제2항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66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여성가족과	1.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한부모가족 상담 및 보호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농업정책과	1. 농지의 이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읍·면장에 한정함) 1. 농지의 임대차, 사용 대차 관리 (읍·면장에 한정함) 1. 농지의 전용신고, 협의 및 변경 (읍·면장에 한정함)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 및 변경(단, 제1항제1호의 규정의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읍·면장에 한정함) 3.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취소 (읍·면장에 한정함) 4.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읍·면장에 한정함)	농지법 제20조 농지법 제23조 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5. 불법 전용농지단속 및 허가 (협의)의 사후관리(원상회복, 고발 등 읍·면장에 한정함) 6.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등 수수료징수(읍·면장에 한정함) 7.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읍·면장에 한정함)	같은 법 제39조, 제42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40조
시민안전 담당관	1.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민방위대 지휘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의 사무  4.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5. 민방위대 동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6. 민방위 준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민방위대 편성(기술지원대제외) 2. 소규모 통·리 지역 민방위대 통합 편성  1. 관내 통·리 민방위대장 감독  1. 지역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1. 민방위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 민방위대 동원명령  1. 민방위 시설·장비 및 물자에 대한 점검	민방위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토지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원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도시디자인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단, 옥상간판, 네온류를 사용한 광고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및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 (읍·면장에 한정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읍·면장에 한정함) 3.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읍·면장에 한정함)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읍·면장에 한정함) 5. 옥외광고물등에 표시허가 취소 (읍·면장에 한정함) 6. 허가·신고 및 안전도검사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읍·면장에 한정함) 7. 행정대집행의 특례 (읍·면장에 한정함)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0조의2
환경과	1.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2.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한강법 제2조제5호 다목에 해당하는 읍·면· 동에 한정함)	1. 야생동물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읍·면장에 한정함) 1.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 2.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3.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4.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결산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9조, 제15조
도시청결과	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읍·면장에 한정함)	1.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등 2. 다량배출자 감량의무 이행계획의 보완요구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에 관한 사항 4. 다량배출자 지도·점검 5. 과태료의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10조제4항 같은 조례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2.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생활폐기물 관련 홍보 및 계도 2. 청결유지명령(읍·면장에 한정함) 3. 가로청소 및 민원처리 (읍·면장에 한정함) 4.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읍·면장에 한정함) 5.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읍·면장에 한정함) 6.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읍·면장에 한정함) 7. 적환장 관리(읍·면장에 한정함) 8. 국토대청결 추진업무  9. 마을별 대청소용 공공용봉투 수령배부 및 마을별 대청소 일정지정 10.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교부 및 판매 11. 종량제 수수료 무상제공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용인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정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5조, 제16조  같은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차량등록사업소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읍·면장에 한정함) 2. 이륜자동차의 변경·사용 폐지 신고(읍·면장에 한정함)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 (읍·면장에 한정함)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읍·면장에 한정함) 5. 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교부(읍·면장에 한함) 6. 이륜자동차(폐지)대장 발급 (읍·면장에 한정함)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3조  같은 법 제9조, 제52조  같은 법 제18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같은 법 제7조, 제52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7.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읍·면장에 한정함) 8.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의 이의신청 수리(읍·면장에 한정함) 9.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읍·면장에 한정함) 10.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읍·면장에 한정함) 11.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읍·면장에 한정함)	같은 법 제26조, 제52조 같은 법 제28조, 제52조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같은 법 제8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